

안양시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

제정 2010. 4. 13 훈령 제548호
일부개정 2014. 9. 1 훈령 제61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6급(상당)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시 소속 6급(상당)이하 일반직, 지도직, 별정직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. <개정 2014. 9. 1>

제3조(대상 업무)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.

제4조(대외직명)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.

제5조(대외직명 사용)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. 다만,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공문서 시행문, 시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
2. 공로패, 기념패, 명패, 명찰,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9. 1 훈령 제61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특례)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.

